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수행자 지정〉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7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혜련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8.
3. 회부연월일 : 2024.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소속 직원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음.

이에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소가(訴價)가 1억 원 이하인 민사소송 또는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행정소송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음. 설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속 공무원이 있더라도 「변호사법」 제38조의 공무원 겸직제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변호사는 휴업하여야 하므로 소송 대리를 할 수 없음.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로서 법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직원이 있더라도 소송을 위해 반드시 외부 변호사를 수입해야 함에

따라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내부 직원에 의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소송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수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5조의2(소송 수행자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¹⁾,

1)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규정²⁾을 두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³⁾, 및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가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

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

②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1.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 등에 한하여 법률상 재판 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아닌 자 또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함)을 근거로 법무부의 직원 등을 국가소송 수행자로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나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가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외하고는 달리 소송대리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함⁵⁾.

즉, 지방자치단체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규정⁶⁾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① 그 대표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②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함⁷⁾.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 또는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상급 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6) 이 경우, 전술한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속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음.

7) 참고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공무원은 임용 시 변호사를 휴업해야 하므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음

참가인으로 하는 모든 소송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속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해당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속직원에 의한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민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송비용의 부담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봄.⁸⁾

다만, 현행법⁹⁾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수행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⁰⁾.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의 소송 수행을 통한 소송비용 부담해소 및 소송사무 관리 등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수행 관련 사항은 「국가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는 입장임.

8) 참고로, 2020년 10월 기준으로 시·도는 1명에서 47명까지 변호사가 있지만, 25개 자치구가 있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 수는 총 3명이며, 15개 자치구와 1개 군이 있는 부산광역시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없었으며, 10개 시와 13개 군이 있는 경상북도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1명이었음.

9)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 참고로, 18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참가인으로하는 소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되었음.

문 의 처
02)6788-5334